시민포상금지급에관한운영규정 [2005. 2. 1 규정 제289호]

지도조사처 02-6311-2106

개정 2005. 4. 22 규정 제294호
개정 2006. 4. 27 규정 제315호
개정 2008. 4. 10 규정 제399호
개정 2012. 1. 12 규정 제632호
타규정 개정 2014. 9. 17 규정 제757호
2015. 1. 1 규정 제796호
2015. 4. 27 규정 제827호
2015. 9. 14 규정 제845호
2016. 12. 26 규정 제9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관할시설구역 내에서 방화, 폭발물, 테러 등을 본인이 직접 사전예방, 범인검거, 화재진압 및 범법행위 신고, 열차 및 시설물 장애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7., 16.12.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시설구역내의 범법행위신고 및 열차· 시설물 장애와 관련된 안전사고 신고 예방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05.4.22, 16.12.26.)

1. 전동차· 역사 및 도시철도시설내에서의 방화신고 및 화재진압
2. 전동차· 역사 및 도시철도시설내에서의 화약류 등 폭발위험물 설치신고 및 제거
3. 전동차· 역사 및 도시철도시설내에서의 독가스 테러신고 및 제거
4. 전동차· 역사 및 도시철도시설내에서의 인명구호, 범인검거 등에 기여 (개정 16.12.26.)
5. 열차 및 시설물 장애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신설 16.12.26.)

제3조(신고자) ①범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범법행위를 경찰관서, 소방관서, 종합관제센터, 역, 기관사 또는 공사 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신고접수처리대장) 범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첩 받은 종합관제센터, 사업소장 및 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범법행위시민신고접수처리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7, 2014.9.17)

제6조(시민신고 처리) ①범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접수한 접수자 는 즉시 확인하고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사가 시민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합관제센터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

다. (개정 2006.4.27)

③ 공사직원이 시민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합관제센터, 사업소장 또는 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14.9.17)

④ 사업소장, 역장 및 기관사는 범법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14.9.17)

⑤ 종합관제센터는 범법행위 시민신고 사항 및 그 처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제7조(처리결과통보) ① 종합관제센터는 범법행위 시민신고사항 처리결과를 지도조사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6.4.27, 2014.9.17)

② 지도조사처장은 종합관제센터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포상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4.27, 2014.9.17., 2015.4.27)

③지도조사처장은 종합관제센터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포상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14.9.17., 2015.4.27)

제8조(포상심의위원회) ① 범법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27.)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외부 및 내부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4.27, 2008.4.10 12.1.12, 2014.9.17, 2015.1.1)

1. 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이 하고 간사는 지도조사처장이 한다. (개정 2015.1.1)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나 간사가 위촉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직제순에 의한 해당처장, 간사는 부서 차하위자로 위임한다. (개정 2014.9.17, 2015.1.1)

3. 내부위원은 처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척사유자를 배제한 분야(집단)별 각 2배수 이상의 후보를 전산입력 후 랜덤 추첨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5.1.1)

4.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변호사, 회계사, 유관기관의 사고조사처리 담당부서(처)장, 손해사정사 등 보험관련 전문가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2인 이하로 위촉한다. (신설 2015.1.1)

③ 제2항제3호에 의한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7, 2014.9.17, 2015.1.1)

1.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2015.1.1)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1.1)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 결정 (개정 2015.4.27.)

2. 감사장, 표창장 지급 심사 (개정 2015.4.27.)

3. 감사장, 표창장의 취소 및 포상금의 환수결정 (개정 2015.4.27.)

3.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27.)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내용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심의의결서에 기록한다. (개정 2015.4.27.)

⑥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2.1.12)

제9조(포상금 결정(개정 05.4.22)) ① 지도조사처장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27, 2014.9.17., 2015.4.27)

② 위원회가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 범인신고 및 검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미리 포상금액을 정하여 수배 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전문개정 05.4.22]

[조제목 개정 15.4.27]

제10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위원회가 별표1에 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27.)

②지급시기는 경찰조사가 끝나거나 신고사항 처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5.4.27.)

제11조(포상금 및 표창장 수여) ①포상금의 지급관리는 지도조사처에서 한다. (개정 2006.4.27, 2014.9.17., 2015.4.27)

② 표창장의 지급은 지도조사처에서 인사처에 요청한다. (개정 2006.4.27, 2014.9.17.)

[조제목 개정 15.4.27]

제12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범법행위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및 감사장, 표창장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5.4.22, 2015.4.27)

1. 고의로 범법행위를 유도하거나 유발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
2. 범법행위 당시 경찰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고자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치단체공무원 등 범법사범을 단속하거나 법에 의한 고발의무가 있는 자
5. 공사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개정 2015.4.27.)
6. 용역사 직원등 공사 사업장내에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 자.
7. 공사에서 일정의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질서 계도요원 등.

②지도조사처장은 신고된 범법사항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14.9.17.)

[조제목 개정 15.4.27]

제13조(신고자의 보호) 사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상금등의 환수) 포상심의위원회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표창장(감사장) 또는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환수의결서(별지3)에 의거 표창장(감사장)은 취소하고 포상금은 환수한다. (개정 2015.4.27.)

[조제목 개정 15.4.27]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05.4.22, 15.4.27, 16.12.26.)

시민 포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보상금 지급기준	비 고
3,000만원 이하	○ 전동차(열차)내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의 사전예방, 범인검거 및 소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	
2,000만원 이하	○ 역사·도시철도시설내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의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	
1,000만원 이하	○ 전동차(열차)내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 범인 체포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자	
500만원 이하	○ 역사·도시철도시설내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 범인 체포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자	
100만원 이하	○ 전동차(열차)내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신고한자	
50만원 이하	○ 역사·도시철도시설내에서의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신고한자 ○ 전동차(열차)내 테러행위를 신고한자 ○ 기타 화재진압, 인명구호, 범인검거 등 중대사고 및 범죄예방에 기여한자	
30만원 이하	○ 열차내 위험물(여객운송규정 제65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승객을 신고한자 ○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 또는 경미한 사항을 신고한자 ○ 열차 및 시설물 장애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자	

※ 감사장 또는 표창장은 상황에 따라 수여

[별지 1]

범법행위 시민신고 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인 성 명	신 고 내 용	신고인 연락처	신 고 접수자	처리결과

[별지 2] (개정 2015.4.27., 15.9.14)

포상금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		제 목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고 및 공 로 사 항				
공 로 사 항				
심 사 결 과	포상금 ₩ 원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심의 의결함.

200 . . .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3] (개정 2015.4.27., 15.9.14)

포상금 환수의결서

의 안 번 호		제 목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고 및 공 로 사 항				
환 수 사 유				
심 사 결 과	환수금 ₩ 원			

위와 같이 포상금 환수를 심의 의결함.

200 . . .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